

보 도 자 료

可以 医终龄 对故则于 吉州 登北 子四 少山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2. 21.(수)		
담당 부서	금융혁신기획단	책임자	팀 장 이종림(02-2100-2841)		
<총괄>	<총괄> 금융규제샌드박스팀	담당자	사무관 한필윤(02-2100-2859)		

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

-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지정 / 14건 지정기간 연장 등 -

금융위원회(김주현	위원장)는 1	.2월 21일	정례회의를	통해 5건의	혁신
금융서비스를 신규	지정 (※ 현기	재까지 누적	북 총 237건	지정)	

아울러,	기존에	지정된	· 혁신금	융서비	스 14	4건에	대한	지정기	기간	연장
및 지정니	내용 변	경 을 곁]정하고,	1건의	혁신	금융사	비스	관련	규제	개선
요청도 4	수용									

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(5건)

①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

(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금융회사가 보유한 **대형 실물자산*** **담보부 대출채권**을 신탁하여 **신탁 수익증권**을 발행하고, 수익증권에 **대응되는 토큰을 유통**하는 서비스입니다.
 - *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(상가/오피스/호텔/물류센터 등), 특별자산(SOC/에너지시설/교통시설 등)
-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하여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하고,

- 금융회사(위탁자)는 신탁회사(수탁자)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 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며.
- 투자자*(수익자)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(플랫폼)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 - *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천만원,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,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% 이내

[특례 내용] 지본시장법 제11조, 제110조제1항, 제119조제1항, 제123조제1항, 제129조. 제373조

-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**자본시장법상 인·허가 규정**, **신탁 수익증권**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*를 부여하였습니다.
 - * ① (자본시장법 §11)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, 수익증권 공모 주선,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
 - ② (자본시장법 §110①)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
 - ❸ (자본시장법 §119①)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
 - ❹ (자본시장법 §123조①, §129)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등 플랫폼 공시 특례
 - ⑤ (자본시장법 §373)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

[기대 효과]

○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,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,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○ **향후** 6개월간 플랫폼 개발,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2~5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

(라이나생명보험, 메리츠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교보생명보험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기존 전화모집(TM)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 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(Web)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하며,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 하는 '미러링 기술'을 활용하여 음성설명도 제공 가능합니다.

[특례 내용]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, 보험업감독규정 제4-36조제10항, 제4-36조의2제4호 및 제4-37조제2호·제3호

- TM모집시 ^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 녹음하고, ^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, ^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되나,
- →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①, ②, ③의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, 청약절차 진행 및 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- ※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·이미지를 결합(보면서 듣는 형태)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'하이브리드 모집방식'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추진 (「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」, '22.11월 발표)
 - o **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**를 갖춘 경우, **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**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 허용
 - ⇒ 향후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경우, **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**도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으로 청약 진행가능 예정

[기대 효과]

○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하여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o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'23년 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 [14건]

①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(교보생명보험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 (서비스 주요내용) 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, 상해,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.

○ (특례내용) 보험업감독규정 제7-49조제2호

- 5인 미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은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나.
 - →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부과하여 **5인 미만 업체**를 대상으로 한 **단체보험 상품**을 **기초서류 신고 없이 개발**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○ 근로자 안전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체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보완이 필요하고,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②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(쿠프파이맵스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'보험 모바일 상품권(쿠폰)'을 구매 또는 선물하여 ^①보험*에 가입하거나, ^②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 - * 소액·생활밀착형인 1년 이내 상해보험, 비용보험, 화재보험(가계성), 책임보험, 동물보험, 도난보험, 날씨보험

○ (특례내용) 보험업법 제2조제12호, 보험업감독규정 제4-33조

-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위를 보험모집으로 간주하지 않고, 쇼핑플랫폼의 정산시점을 감안하여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사전 납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○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③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(그레이드헬스체인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 (서비스 주요내용)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보험계약자의 건강 검진기록 및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제휴 보험회사를 통해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

○ (특례내용) 보험업법 제98조제2호

-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*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,
 - *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3종
- → 보험회사가 **이미 체결된 보유계약**에 대해서도 **보험료를 할인**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○ 제휴사의 확대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성·안정성 등 성과검증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④ **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** (코인플러그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에 디지털 실명 확인증표를 발급·저장하고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- (특례내용)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,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
 -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의 5가지 방법*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,
 - *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: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, ④기존 계좌 활용, ⑤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
 - → 최초 1회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시 **안면인식기술**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상 **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**하는 방식을 **5가지 비대면** 실**명확인 방법 중 하나**로 **인정**하고,
 - →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고객 휴대폰에 발급·저장된 **디지털 실명** 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경우,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○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**지정기간을 2년 연장** 하였습니다.

5~7 안면인식기술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

(토스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증권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 (서비스 주요내용)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 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

○ (특례내용)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,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

-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의 5가지 방법*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 하여야 하나,
 - *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: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, ④기존 계좌 활용, ⑤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
 - → 영상통화 대신 **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**하는 안면인식기술을 **비대면 실명확인 방법**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○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[지정내용 변경]

o 카카오뱅크, 토스증권 2개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서비스에 이용 가능한 실명확인증표로 기존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외에 '여권'을 추가하였습니다.

8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(신한은행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(배달앱)을 개발·운영 하고, 배달앱과 금융을 결합하여 배달앱 이용자(소상공인, 소비자, 배달 라이더)에게 저렴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*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 - * 음식주문·배달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·라이더 대상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신규 금융 상품 출시, PG업 직접 영위를 통한 신속 정산서비스 제공, 다양한 결제편의성 제공 등

○ (특례내용) 은행법 제27조의2

-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**플랫폼 사업을 영위**하면서 **특화 금융서비스**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**부수업무**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- **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**을 통한 소상공인·배달라이더 전용 **대출 실행**, 신속한 정산서비스, 중개·결제수수료 절감 등 혁신성과 포용성 측면 에서 그간의 혁신서비스 제공 성과가 인정되고.
- 향후 추가 서비스 출시 및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므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⑨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 (신한카드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○ (서비스 주요내용) 신용카드업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매출전표 접수일에현금 대신 포인트(선물전자지급수단)로 지급하고, 가맹점주는 본인의 신용카드·체크카드로 물품 등 구입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.

○ (특례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

-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으나,
 - →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**가맹점수수료 부과 없이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포인트로 지급**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 서비스의 안정적·연속적 제공 필요성, 포인트 신속 지급을 통한 영세 가맹점주의 유동성 제고 편의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.

10~12 부동산 임대료 카드납부 서비스 (우리카드, 삼성카드, 현대카드)

[기존 지정내용] ('20.12.22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신용카드로 납부(월 200만원 한도)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- (특례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, 제18조의3 제2항·제3항, 제19조 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4항
 -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임차인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2.12.22. ~ '24.12.21.)

○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[지정내용 변경]

○ 현대카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타사 유사 서비스와 동일 하게 월 200만원(기존 월 150만원)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.

13~14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(신한카드, 삼성카드)

[기존 지정내용] ('21.1.27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(만 12세이상, 중·고등학생)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(가족카드)를 발급·사용*토록하고,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, 이용한도,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 - * 월 이용한도 10만원,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

○ (특례내용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

-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나,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(가족 카드)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3.1.27. ~ '25.1.26.)

○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[1건]

□ □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(아이콘루프)

[서비스 개요] ('19.6.26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사용자 스스로 신원정보에 대한 증명, 제출 범위와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*입니다.
 - * 최초 1회 비대면실명확인 후 타기관에서 인증요청 시 비밀번호 입력 등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

○ (특례내용)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,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

-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의 5가지 방법*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 하여야 하나,
 - *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: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, ④기존 계좌 활용, ⑤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
 - → 서비스 가입 시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보관 앱을 통해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한 후 금융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행 시 기존 앱을 통한 인증을 실명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규제개선 요청]

- 아이콘루프는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 시 **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확인 수단을 이용**하여 **고객확인 절차**를 밟을 수 있도록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3조 등에 대한 **특례 부여를 통한 규제개선** 요청하였고.
 - 이에 금융위는, 규제 개선의 필요성, 그간 운영성과, 금융시장·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**규제 개선 요청**을 **수용** 하였습니다.
 - *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(최대 1년6개월)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팀 장	이종림 (02-2100-2841)
<총괄>	금융규제샌드박스팀	담당자	사무관	한필윤 (02-2100-2859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950)
	은행과	담당자	사무관	이수암 (02-2100-2676) 박종혁 (02-2100-2952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보험과	담당자	사무관	박성진 (02-2100-2967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오화세 (02-2100-2990)
	중소금융과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 (02-2100-2992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	자본시장과	담당자	사무관	심원태 (02-2100-2656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고영호 (02-2100-2660)
	자산운용과	담당자	사무관	윤우근 (02-2100-2661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부곤 (02-3145-7120)
	디지털금융혁신국	담당자	팀 장	안병남 (02-3145-7130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팀 장	이권홍 (02-3145-7450)
	보험감독국	담당자	팀 장	김태훈 (02-3145-7474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범수 (02-3145-8220)
	금융상품심사분석국	담당자	팀 장	주요한 (02-3145-8240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준환 (02-3145-8020)
	은행감독국	담당자	팀 장	양유형 (02-3145-8022)
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종오 (02-3145-7550)
	여신금융감독국		팀 장	이성희 (02-3145-7552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재석 (02-3145-7500)
	자금세탁방지실	담당자	팀 장	전홍균(02-3145-7502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황선오 (02-3145-7580)
	자본시장감독국	담당자	팀 장	조영석 (02-3145-7590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최강석 (02-3145-6700)
	자산운용감독국	담당자	팀 장	김준호 (02-3145-6755)



